



PERFORMANCE
FREEDIVING
INTERNATIONAL

퍼포먼스 프리다이빙

인터내셔널(PFI)

■ 규정과 절차

퍼포먼스 프리다이빙 과정의 규정과 절차



PERFORMANCE
FREEDIVING
INTERNATIONAL

**퍼포먼스 프리다이빙 인터내셔널(PFI)
규정과 절차**

PERFORMANCE FREEDIVING INTERNATIONAL

퍼포먼스 프리다이빙 인터내셔널(PFI) 규정과 절차 Performance Freediving International Standards and Procedures Manual

발행자:

에스텍(STEK)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69번길 20 오션빌딩 4층 (우)12746

Phone: 010-2633-6273

Fax: 031-761-6283

www.tdisdi.co.kr

Email: hq@tdisdi.co.kr

영문발행:

International Training

Phone: (888) 778-9073

Fax: (877) 436-7096

tdisdi.com

Email: worldhq@internationaltraining.us

판권

이 책은 발행자(STEK)의 허가 없이 어떤 형태로도 사용하거나 변형할 수 없다.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발행자(STEK)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장

introduction

서론

목 차

1. 강사 패키지	11
2. 이 매뉴얼의 사용 방법	12
3. 행정 절차(Administrative Procedures).....	12
▶ 3.1 인증서(Certifications)	12
▶ 3.2 면책서 및 서류(Waivers & Documentation)	12
4. 강사 및 인증된 보조 강사의 자격(Instructors & Certified Assistant Qualifications)	13
▶ 4.1 활동성 상태(Active Status)	13
▶ 4.2 통제(Control)	13
5. 제한 수역 교육(Confined Water Training).....	14
▶ 5.1 제한 수역의 정의(Definition of Confined Water)	14
▶ 5.2 시범 및 평가(Demonstration and Evaluation Requirements)	14
▶ 5.3 제한 수역 교육 예절(Confined Water Training Etiquette)	14
6. 개방 수역 교육(Open Water Training).....	14
▶ 6.1 개방 수역의 정의(Definition of Open Water)	14
▶ 6.2 개방 수역 예절(Open Water Training Etiquette).....	16

7. 주니어 인증(Junior Certifications) 16

8. 코칭 세션(Coaching Sessions) 16

9. 운동 제어 능력 상실과 블랙아웃(Loss of Motor Control & Blackouts) 16

10. PFI 윤리 규정과 행동 규범 17

11. 필요 장비(Equipment Requirements)..... 18

12. 사고(In the event of an accident) 19

13. 일반 규정(General)..... 20

- ▶ 13.1 지역 본부 소속 절차(Regional Office Affiliation Procedures) 20
- ▶ 13.2 활동성 교습 상태(Active Teaching Status) 20
- ▶ 13.3 유예 상태(Probation Status)..... 21
- ▶ 13.4 비교습 상태(Non-Teaching Status) 21
- ▶ 13.5 보류 상태(Suspended Status) 21
- ▶ 13.6 제명 상태(Expelled Status) 21
- ▶ 13.7 PFI 품질 보증(QA) 절차 22
- ▶ 13.8 정의(Definitions) 24
- ▶ 13.9 양식(Forms)..... 25
- ▶ 13.10 최종 시험(Exams) 25
- ▶ 13.11 다이빙 지도자 크로스오버(Crossover) 요건 25
- ▶ 13.12 2년 갱신/보충 정책(Two Year Renewal/Refresher Policy) 25

Revision History		
Revision Number	Date	Changes
0719	07/01/2019	Initial Standards
0120	01/01/2020	3.1.2 Defined the valid term for a physician signed medical 10. Re-titled to "PFI Code of Ethics and Conduct", bulleted list added 13. Replaced "must" with "should" 13.12 "Note" Expanded upon
0720	07/24/2020	Changes affecting PFI standards for mid second quarter 2020 include reducing and correcting student to instructor ratios with Assistant Instructors, allowing the use of manikins to perform safety skills, increase the distance a safety buddy may be from the diver, change the method of coaching recovery breathing, established most skills as graduation requirements, corrected minor formatting errors and typographical mistakes.
0121	01/01/2021	Corrected minor typographical errors 6.1 Additional options added for the instructor
0122	01/01/2022	2. Clarified that all PFI instructors must possess required materials for courses 3.2 Corrected the name of the PFI General Liability form to "PFI General Liability and Express Assumption of Risk" form 4.2 Paragraph 2 changed, paragraph 4 removed.
0123	01/01/2023	13.5 Item added for Membership agreement 13.6 Added suspension/termination for cause clause



1. 강사 패키지

이 패키지에는 PFI 강사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의 모든 정보는 www.tdisdi.co.kr 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항상 이 패키지를 곁에 두고 참고하시오. 물품 주문, 학생 등록 등에 필요한 양식들은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원본은 보관하고 사용할 때는 복사본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퍼포먼스 프리다이빙 인터내셔널(PFI) 한국 본부: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69번길 20 오션빌딩 4층 (우)12746

전화: 010-2633-6273

팩스: 031-761-6283

이메일: hq@tdisdi.co.kr

홈페이지: www.tdisdi.co.kr

상품 주문 또는 교육생 등록은 24시간 언제든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퍼포먼스 프리다이빙 인터내셔널(PFI)의 직원들은 여러분과 사업을 함께 하게 된 것에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사업적 요구, 문의 또는 관심사를 기꺼이 처리하며 가능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2. 이 매뉴얼의 사용 방법

PFI 규정과 절차, PFI 강사 매뉴얼 및 기타 모든 PFI 인쇄 자료는 PFI 교습 시스템의 기초가 되며 모든 PFI 과정에 사용되어야 한다. PFI 강사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교재를 소유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들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PFI 규정과 절차가 우선한다. 만약 의심스러운 것이 있는 경우, PFI 한국 본부에 문의하여 지침 또는 해석을 받아야 한다.

3. 행정 절차(Administrative Procedures)

3.1 인증서(Certifications)

모든 PFI 강사는 PFI 규정과 절차에 명시된 모든 수수료 조건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과정 등록비 및 강사와 합의한 교육비를 지불한 모든 학생에 대한 PFI 인증을 처리해야 한다.

PFI 강사는 학생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이후 7일 이내에 학생을 등록해야 한다.

3.2 면책서 및 서류(Waivers & Documentation)

다음 문서를 검토하고 서명해야 한다:

1. 학생은 실습 교육 전에 건강 질의서 양식(Medical History Form)을 읽고 서명해야 한다. 만약 학생의 건강 질의서 또는 외관 및 행동이 안전하게 다이빙 활동을 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면, 학생은 실습 교육 전에 다이빙과 관련된 건강 검진을 받고 다이빙 활동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서명이 포함된 건강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의사가 만약 학생의 가족 구성원이라면 서명할 수 없다. 학생이 미성년일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건강 질의서 검토와 서명이 필요하다. 의사가 서명한 건강 진단서는 건강 상태에 변화가 없을 경우, 해당 양식에서 더 긴 유효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한 12개월간 유효하다.
2. 모든 학생은 실습 교육에 앞서, 교육을 시작할 때 PFI 면책서 및 위험 고지(PFI General Liability and Express Assumption of Risk) 양식을 검토하고 서명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지역의 법과 규정에 따른 보호자의 검토와 서명이 필요하다.

해당 지역의 법률이 더 긴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 PFI 강사는 학생의 교육, 기술, 이론 진행 상황과 평가 기록을 모든 법적 서류와 함께 7년간 보관해야 한다.

4. 강사 및 인증된 보조 강사의 자격(Instructors & Certified Assistant Qualifications)

모든 PFI 프리다이빙 수퍼바이저, 보조 강사, 강사 및 강사 트레이너를 여기서는 “PFI 회원(PFI Professional Member)”이라 지칭한다. “PFI 강사” 또는 “PFI 보조 강사”는 모든 프리다이버, 중급 프리다이버(Intermediate Freediver), 어드밴스드 프리다이버와 강사 트레이너 과정의 강사 및 보조 강사를 지칭한다.

모든 PFI 지도자는 해당 지역의 법에 따라 책임 보험(Liability Insurance)에 가입해야 한다.

4.1 활동성 상태(Active Status)

활동성 회원은 현재의 PFI 회원 상태를 유지하고 연회비를 납부하며 PFI가 인정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품질 보증 절차(Quality Assurance)에 따른 조사 대상이 되어 임시 또는 영구 보류(Suspension)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4.2 통제(Control)

해당 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활동성 PFI 강사는 모든 PFI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관리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과정 교습 인증을 받은 PFI 보조 강사를 참여시켜 PFI 교육을 보조해야 한다. 될 수 있으면 **인증 받은 PFI 보조 강사를 참여시켜 PFI 교육을 보조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한다.** PFI 보조 강사는 독립적으로 가르칠 수 없다.

PFI 모든 등급의 보조 강사는 강사의 간접 감독 하에서 제한 수역과 개방 수역을 가르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강사가 직접 개입 해야하므로, 보조 강사는 해당 등급의 강사가 없는 경우 물(제한수역 또는 개방수역)에서 과정을 실시 할 수 없다.

제한 수역과 개방 수역에서 허용되는 최대 학생과 강사의 비율은 각 과정의 규정에 나와 있다. **강의실 교육에서의 학생과 강사의 비율은 해당 PFI 강사가 결정하며, 학생의 요구와 현재 상태에 따라 효과적으로 강의를 전달할 수 있는지, 강사의 능력에 기초한다.** 가능하면 복수의 강사 또는 보조 강사가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제한 수역과 개방 수역의 학생과 강사의 비율은 개인간 적절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낮출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개방 수역 조건에 따라 학생과 강사의 비율을 줄여야 하는 경우, 해당 과정의 규정이 허용하는 만큼 PFI 강사 또는 보조 강사를 교육에 참여시켜 그 비율을 줄일 수 있다.

5. 제한 구역 교육(Confined Water Training)

5.1 제한 구역의 정의(Definition of Confined Water)

제한 구역은 수영장, 호수, 해변과 같은 구역을 포함한 이와 비슷한 조건의 구역을 포함한다. 제한 구역은 잔잔하고, 시야가 좋고, 따뜻하고 안전해야 한다. 수영장이 아닌 모든 제한 구역은 PFI 훈련부(Training Department)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 시범 및 평가(Demonstration and Evaluation Requirements)

학생이 PFI 강사가 만족할 만큼 PFI 기술을 이해하고 시범 보이며 전체적으로 일관된 수준을 과정이 끝날 때까지 보여주면, PFI 강사는 최종 인증을 위한 조건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간주할 것이다.

5.3 제한 구역 교육 예절(Confined Water Training Etiquette)

기술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기술을 하는 동안 안전을 강화하고 회복 호흡을 습득하기 위해 직접 감독 및 회복 호흡 절차를 갖춘 버디 A와 버디 B가 함께, 기술 시범을 하는 다이버(performer)와 수면 안전을 담당하는 수면 세이프티(Surface Safety)로 연습해야 한다. 또한 가능하면 학생은 제한 구역을 '해양 환경'과 같이 생각하여 해양에서의 프리다이빙과 같은 규칙으로 마스크와 스노클을 포함한 모든 장비를 착용 및 배치하고 수영장의 측면을 불필요하게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

6. 개방 구역 교육(Open Water Training)

6.1 개방 구역의 정의(Definition of Open Water)

개방 구역은 수영장과는 다른 환경의 구역이다. 개방 구역 다이빙 사이트는 현지 다이빙 환경 조건과 같아야 한다.

과정당 최소 개방 구역 교육 다이빙 시간은 각 과정 규정에 나와 있다. 개방 구역 교육은 하루에 최대 2번의 교육 세션을 6시간(세션 중간 휴식 제외) 동안 진행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입수와 출수, 장비 준비와 해체, 다이빙 전 후 브리핑이 포함되어 있다.

PFI 지도자는 언제든지 응급 구조를 할 수 있는 준비로 학생을 깨끗하게 관찰할 수 있거나 5m 이내의 촉각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위치를 학생의 모든 훈련 다이빙 최대 수심까지 유지해야 한다. 랜야드(Lanyard)는 모든 수중 교육 세션에서 강사와 5m의 거리에서 시각적이거나 촉각적인 접촉을 상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40m가 넘는 모든 프리다이빙은

최소한 랜야드가 있는 프리다이버 회수 구조 시스템(Freediver Retrieval System)을 사용해야 하며 그동안 강사는 40m까지 학생의 5m 이내에 있어야 하며, 40m 보다 깊은 곳에서는 강사와 보조 강사가 적절한 감독을 유지해야 하고 프리다이버 회수 구조 시스템(FRS)을 적절한 시간 내에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중급(Intermediate) 프리다이버 과정에서 강사는 교육 초기에 학생을 따라 25m 수심에 멈춰서 학생과 5m 이내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으며, 학생이 40m까지 더 깊은 수심을 위한 교육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수심의 모든 기술 조건을 완료한다.
2. 학생들은 랜야드를 착용한 채 바닥에서 방향 전환, 머리 자세 등을 포함한 적절한 기술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3. 강사 신호에 반응하여 프리다이버 회수 구조 시스템(FRS)을 작동할 수 있는 적절한 수면 지원이 있어야 한다. PFI 지도자와 학생은 FRS 작동 방법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학생은 랜야드 영킴에 대한 연습을 포함한 랜야드를 올바르게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낮은 수심에서 보여줘야 한다.

프리다이버 회수 구조 시스템(FRS)은 응급 상황에서 프리다이버를 수면으로 끌어 올리도록 설계되어 있다. 프리다이버 회수 구조 시스템(FRS)에는 다음과 같은 속성이 있어야 한다:

- 바텀 플레이트(Bottom plate)와 웨이트.
- 같은 무게의 반대편 웨이트와 추가 웨이트.
- 깊이를 설정하고 고정이 가능해야 한다.
- 반대편 웨이트를 풀어 초당 1미터 이상 다이버를 끌어 올릴 수 있어야 한다.
- 모든 동력 시스템(전기식, 유압식 또는 기타)은 수동 백업이 있어야 한다.

PFI 전문가는 환경 조건이나 학생/참가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 혹은 장비 결함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교육 실습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PFI 전문가가 개방 수역 교육 현장에서 내리는 가치 판단이다. 학생이 다이빙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지 못한다면 학생은 같은 날 늦게 (일일 최대 교육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또는 상황이 해결된 다른 날에 다이빙을 할 수 있다.*

마커/깃발과 수면 부이(Support Float)가 있는 상승/지지(Ascent/Support) 라인이 교육 다이빙 장소에서 항상 사용되어야 하며 투어인 경우에는 다이빙 장소 마커와 깃발, 수면 부이가 꼭 있어야 한다. 다이빙이 보트에서 진행된다면 다이빙 깃발이 보트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다이버는 보트나 깃발 근처 현지법에서 지시하는 거리 안에 있어야 한다. 해안에서 다이빙을 할

경우, PFI 강사는 다이빙 깃발을 가져오거나 다이빙 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깃발을 사용하고 다이버는 다이빙 깃발 근처 현지법에서 지시하는 거리 안에 있어야 한다.

6.2 개방 수역 예절(Open Water Training Etiquette)

기술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기술을 하는 동안 안전을 강화하고 회복 호흡을 습득하기 위해 직접 감독 및 회복 호흡 절차를 갖춘 버디 A와 버디 B가 함께, 기술 시범을 하는 다이버(Performer)와 수면 안전을 담당하는 수면 세이프티(Surface Safety)로 연습해야 한다. 또한 가능하면 학생은 마스크를 얼굴에 착용하고 스노클을 물고 호흡하는 등 개방 수역 프리다이빙의 모든 절차를 따라야 한다.

7. 주니어 인증(Junior Certifications)

과정 등급의 모든 수료 조건을 완료한 학생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주니어 등급으로 인증된다. 주니어 프리다이버는 인증 받은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와 함께 프리다이빙을 해야 한다. 주니어 프리다이버의 나이가 16세가 되면 해당 등급의 성인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8. 코칭 세션(Coaching Sessions)

코칭 세션은 인증된 프리다이버(또는 동등 등급)가 본인의 인증 등급 내에서 기술을 익히기 위해, 또는 인증되지 않은 학생들을 인증에 필요한 수준까지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PFI 강사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 코칭 세션의 규정은 코칭 세션을 진행하는 학생의 인증 등급 규정이 적용된다. 코칭 세션에 참여하기 위해 학생은 해당 전체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최소한 모든 이론 교육과 수영장, 최종 시험을 완료해야 한다. 코칭 세션은 다음 과정의 기술을 배우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9. 운동 제어 능력 상실과 블랙아웃(Loss of Motor Control & Blackouts)

실습 훈련 중 언제든지 블랙아웃(Blackout)이 발생한다면 학생은 그 날의 프리다이빙을 중단해야 한다. 블랙아웃을 경험한 학생은 프리다이빙 활동을 참관하기 위해 수면에 머물 수는 있으나 무호흡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학생이 구조 호흡을 받고 호흡을 회복했다면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나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니어 블랙아웃(Near-Blackout)을 경험한 학생은 기본 기술과 워밍업 다이빙을 할 수는 있으나 목표 다이빙(Target Diving)은 할 수 없고 강사가 가까이, 강사의 직접 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강사는 이러한 예외가 강습 중에 강사의 직접 감독 하에서만 있을 수 있고 편다이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학생들에게 강조해야 한다.

니어 블랙아웃(Near-Blackout), 운동 제어 능력 상실(LMC) 또는 흔히 '삼바(Samba)'는 의식을 잃지 않는 저산소증으로 정의된다.

니어 블랙아웃(near-Blackout), 저산소증의 징후와 증상은 다음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집중력과 명확한 사고력 상실
- 근육의 운동 조절 상실과 섬세한 작업 수행 능력 상실
- 호흡 불안정
- 혼란과 정서적 불안정
- 판단 능력 상실
- 졸음과 힘 빠짐
- 이상 행복감
- 시각적 이상
- 청색증

블랙아웃(Blackout)은 완전한 의식 상실과 근육의 제어 능력을 상실하여 물 밖으로 기도를 유지하기 힘든 위험한 상태의 저산소증으로 정의된다.

블랙아웃(Blackout)에서 벗어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1. 자가 의식 회복(Self-regained consciousness), 심폐소생술(Basic Life Support) 없이 스스로 의식을 되찾고 신체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2. 자가 회복 불능(Assisted consciousness), 심폐소생술(BLS)이 필요한 상황

수중 교육을 진행하는 모든 PFI 강사는 다이빙 사고에 대비한 서면 응급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응급 장비는 다이빙 장소 부근에 있어야 하며 응급처치 키트, 산소, 통신 장비가 포함된다. *응급 장비는 PFI 강사가 가지고 오거나 다이빙 센터 혹은 현지 공공 안전 기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고 5분 이내에 응급 의료 서비스를 부를 수 있어야 한다.*

10. PFI 윤리 규정과 행동 규범

PFI 지도자는 수중에서 학생에게 어떤 기술을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학생이 구두로 또는 행동으로 기술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 PFI 지도자는 학생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학생이 수중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훈련 수준에 도달했을 때 실질적인 문제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실제 다이빙 상황에서처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PFI 지도자는 학생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PFI 지도자는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춥거나 피곤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상을 입거나, 몸이 좋지 않거나, 최근에 아팠을 경우, 다이빙을 하지 않거나, 적절하게 당일 다이빙을 중단해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 레크리에이션 프리다이빙은 다른 레크리에이션 스포츠와는 달리 어느 정도의 위험성과 책임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 PFI 프리다이버는 기꺼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짝(buddy)이 되어 주거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을 배우도록 권할 수 있어야 한다.
- PFI 전문가는 항상 다이빙과 관련하여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한다.
- PFI 전문가는 항상 자신의 장비를 관리하고 결함이 있는 장비로 다이빙해서는 안 된다.
- PFI 전문가는 전문가적인 자세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레크리에이션 프리다이빙 분야에서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 PFI 전문가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레크리에이션 프리다이빙을 시켜서는 안 된다.
- PFI 전문가는 자신들의 지식을 레크리에이션 프리다이버들에게 전달하거나 다이빙계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형식을 갖춘 강습, 질의에 대한 답변 또는 서적 출판과 잡지 기고 등을 통하여 최선을 다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PFI 전문가는 항상 수중 환경을 보호하는 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 PFI 전문가는 자신들의 자발적인 지원으로 PFI의 회원이 되었으므로, PFI에 적응하여 PFI를 발전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다. 이런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PFI 프리다이버와 강사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야 한다:
 - 단체의 일원으로서 PFI를 공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개선이 필요한 경우 책임 있는 PFI 회원이나 다이버와 직접 접촉하는 전문가적인 방식으로 필요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모든 PFI 회원은 PFI 규정과 윤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 모든 PFI 회원은 강의, 기사, 서적, 통신 등 모든 활동에서 전문가적인 행동과 도덕적인 규범을 보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이빙을 비난하거나 선동하는 언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 다이빙에 대하여 부정확한 비판과 고의적인 선동 언행은 부적절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11. 필요 장비(Equipment Requirements)

모든 수중 훈련에서 학생은 해당 과정 규정에서 명시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방 수역 교육 동안 모든 PFI 지도자는 학생이 착용한 장비 외에 수심계와 별도의 시간 측정 장치, 시각 및 청각 비상 신호 장치, 칼/라인 커터 및 산소를 구비해야 한다.

수면 구조 실습에서 프리다이버의 크기 형태, 부력 및 움직임 특성이 비슷하다면 사람 대신 마네킹으로 대신할 수 있다. 마네킹은 구매한 것이거나 강사가 위의 조건에 맞게 만들 수도 있다.

12. 사고(In the event of an accident)

사고가 발생한다면, 무엇보다도 사고자를 돌보아야 한다. 추가적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다면 다음과 같다:

- 사고자의 장비 확보 - 심각한 사고 발생 시, 현지 경찰 또는 당국이 사고자의 장비를 압수할 수 있다.
- 관련된 모든 정보를 모아 PFI 사고/사건 보고서에 기록한다.
- 사고자의 가족과 친구에게 조의를 표한다.
- 사고/사건의 사실들에 대해 추측하지 않는다.
- 누군가의 책임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 모든 것의 사진을 찍는다.

가능한 빨리 사고/사건 보고서를 작성하여 PFI 국제 본부(PFI HQ) 또는 해당 지역 본부로 이메일 또는 팩스를 보낸다. 관련된 모든 면책서의 사본을 동봉하고 교육 중 일어난 사고라면, 건강 기록 양식과 학생 훈련 기록부를 첨부한다. 모든 사고와 관련된 사실은 (아주 관련성이 적은 것이라도) 보고해야 한다. 보험 회사에서 어떤 보고 절차를 요구한다면 성실히 응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똑같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러 다른 종류의 보고서는 피해야 한다) 국제 본부(International Training), 현지 관계 당국 또는 다른 교육 기관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모든 공식적인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뉴스, 미디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진술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신중한 다이빙 전문가들은 응급 절차를 수립하며 모든 교육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상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CPR과 응급처치 인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이러한 신중함을 보여준다. 각각의 장소에서 가용한 응급 의료 센터의 연락처를 확인해 두어야 한다.

응급 상황을 통제하여 임무를 부여하고 장비를 점검하고 주변 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한다. 메모를 하여 보고서를 위한 시간 표시를 하고 사진 장비로 주변 지역을 촬영한다. 목격자를 면담하고 많은 목격자로부터 목격한 것을 기록한다면 사고 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사고 보고서를 제때에 완료하여 적절한 기관 또는 사람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며 이 내용은 제3자와 공유해서는 안 된다.

13. 일반 규정(General)

1. 강사와 강사 트레이너는 이 일반 규정에 명시된 '2년 갱신/보충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2. 회원은 PFI 과정을 가르치기 전에 본인이 해당 등급의 인증을 갖추고 있고 갱신이 완료되어 활동성 교습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3. 다른 예외 사항이 없다면, 모든 교육 과정은 12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
4. 모든 PFI 과정에서 학생은 이전 단계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술을 새로운 강사 앞에서 시범 보일 수 있다.
5. 모든 신규 회원은 지도자 등급 지원서와 함께 서명된 멤버십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멤버십 동의서는 규정 5장에서 찾을 수 있다.

13.1 지역 본부 소속 절차(Regional Office Affiliation Procedures)

1. 회원은 다음과 같은 지침에 따라 거주 국가를 관장하는 지역 본부에 속해야 한다:
 - a. 4개월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 b. 만약, 강습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체류할 경우 그 기간이 4개월이 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 본부에 속할 필요가 없다.
2. 모든 회원은 거주 국가의 지역 본부에 등록하여 소속되어야 한다.
 - a. 강사 트레이너는 지도자등급 지원서를 해당 지역의 지역 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 b. 새로운 다이빙 지도자를 어디에 등록해야 하는지 모를 경우, 강사 트레이너는 PFI 국제본부에 연락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회원은 그들이 속한 지역과 일치하는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모든 회원은 그들이 속한 지역을 벗어나 과정을 진행할 경우 과정을 진행하려는 해당 지역 본부에 연락하여 지역의 법과 규칙, 규정을 숙지하고 그 지역 본부에 대한 예의를 표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13.2 활동성 교습 상태(Active Teaching Status)

모든 활동성 교습 상태의 강사는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연회비 완납
2. 모든 미납금 납부
3. 가입이 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현재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증빙 서류
4. 최소 한 번의 PFI 과정을 가르치거나 보조해야 한다. PFI 과정을 가르치고 인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활동성 교습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5. 지도자 등급으로서 필요한 모든 기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3.3 유예 상태(Probation Status)

강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유예 상태가 될 수 있다:

1. 미수금이 90일이 넘을 경우
2. 활동성 교습 상태가 되기 위한 조건을 어긴 경우
3. 강습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유예(Probation) 상태가 된 강사는 PFI 과정을 가르치거나 인증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추가의 규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유예 상태에서 보류(Suspended) 또는 제명(Expelled) 될 수 있다.

13.4 비교습 상태(Non-Teaching Status)

강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비교습 상태가 될 수 있다:

1. 미수금이 90일이 넘을 경우
2. 임시 보류(Suspension) 상태인 경우
3. 활동성 교습 상태를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비교습(Non-Teaching) 상태의 강사는 PFI 과정을 가르치거나 인증을 줄 수 없다.

13.5 보류 상태(Suspended Status)

강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보류 상태가 될 수 있다:

1. 미수금이 120일이 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
2. 활동성 교습 상태를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3. 강습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류(Suspended) 상태가 된 강사는 PFI 과정을 가르치거나 인증을 줄 수 없으며 추가의 규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보류(Suspended) 상태에서 제명(Expelled) 될 수 있다.

13.6 제명 상태(Expelled Status)

강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제명 상태가 될 수 있다:

1. 미수금이 120일이 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
2. 한 가지 이상의 사안에 대하여 보류 또는 유예 판정을 받을 경우
3. 활동성 교습 상태를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4. 강습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전문 강사로서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제명(Expelled) 상태가 된 강사는 PFI 과정을 가르치거나 인증을 줄 수 없다. 제명(Expelled)된 강사는 다시 PFI 회원이 될 수 없다.

주의: PFI는 규정을 위반한 회원의 자격을 보류하거나 제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보류 또는 중지의 이유 - IT(International Training)는 회원의 다음 행위에 대해 회원자격을 보류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i) 다음에 연루된 경우 (A) 중죄 또는 (B) 약물 또는 중독 물질의 반복 사용; 또는 (ii) IT(International Training), 모회사 또는 자회사 그리고 계열사 및 임원, 직원 또는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고 IT(International Training)의 비즈니스 명성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13.7 PFI 품질 보증(QA) 절차

교육의 품질 보증에 관련된 문제는 PFI 국제본부 훈련부에서 관장한다. 이것은 현지 지역 본부와 판매 담당자들이 최종 결론에서 중립적인 입장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3.7.1. 일반 품질 보증 절차(General Quality Assurance Procedures)

일반 품질보증은 최근에 강사로부터 인증을 받은 학생들에게 무작위로 질의서를 발송하여 확인한다. 이 질의서에는 강사의 교육 품질과 해당 교재를 사용하였는가 등을 묻는다.

질의서는 학생의 주소로 반송우편과 함께 배달되거나 이메일로 전달되며 과정 전반에 대한 설문서 양식이다.

질의서는 PFI 국제본부의 훈련부로 전달된다.

비영어(Non-English) 사용자는 해당 언어로 번역되어 전달된다. PFI 강사의 강습에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1. 무혐의(No Action Required)
2. 유예(Probation)
3. 보류(Suspension)
4. 제명(Expulsion)

13.7.2. 무혐의(No Action Required)

무혐이란 훈련부로 전달된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13.7.3. 유예(Probation)

유예 상태는 해당 회원을 통하여 등록된 모든 학생에게 질의서를 보낸다. 그러나 강사는 강습을 제한 받거나 방해 받지 않는다. 이 상태는 회원에게 별도의 고지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며 기간은 일반적으로 짧다. 유예 상태는 훈련부에서 해당 회원이 PFI의 규정과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조치될 수 있다. 회원은 고소인의 서면 고발 없이 훈련부 자체의 판단에 의해서도 유예 상태가 될 수 있다.

13.7.4. 보류(Suspension)

보류 상태의 회원은 해당 기간 동안 강습을 할 수 없다. 훈련부에서는 회원에게 보류 상태와 그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보한다. 보류 상태가 되면 회원은 15일 내에 혐의에 대하여 반박 자료를 훈련부에 제출해야 하며 그 이후에 훈련부는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한다.

13.7.5. 제명(Expelled)

제명된 회원은 무기한 PFI 프로그램을 가르칠 수 없다. 여러 차례의 권고를 무시하거나 제명 이외에는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에 회원은 제명된다. 제명은 훈련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국제본부 회장의 권한으로 실시된다.

개인과 관련된 모든 품질보증(QA) 자료는 본부 훈련부에서 인정한 기관 또는 사람 이외에는 비밀로 한다.

지역 본부와 관리자는 품질보증(QA)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요청받을 수 있다.

임시 상태 또는 복귀 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요건이 완료될 때까지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

13.7.6. 국제 본부 품질 보증 절차(HQ Quality Assurance Steps)

- **1단계:** 국제본부의 훈련부는 규정 위반 또는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한 서면 또는 설문서를 접수한다. 서면은 반드시 작성자/보고자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전자 서명도 가능함) 전화 보고는 효력이 없음.
- **2단계:** PFI 국제본부 훈련부는 문제가 제기된 회원의 상태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점검한다. 국제본부는 대상 회원의 연락처로 위반 보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한다. 통지는 우선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전달되고 추후 서면으로 통지된다.
- **3단계:** 통지서는 품질보증 위반 사실을 포함한다. 통지를 받은 회원은 15일 내에 서면으로 해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4단계:** 본부는 과거 학생들에게 과정에 대한 설문서를 보낸다.

■ **5단계:**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한 뒤에 결론을 내린다. PFI 국제본부 훈련부는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대상 회원에게 전달한다.

■ **6단계:** 회원의 상태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된다.

사용된 자료와 강의 품질에 대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국제 본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강사 파일에 기록된다.

13.8 정의(Definitions)

감독(Supervision):

1. **직접 감독(Direct supervision):** 강사 또는 인증된 조교가 교육생이 다이빙을 통해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눈으로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 직접 감독은 해당 과정에서 학생의 기술 습득과 개발을 개별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해야 한다.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동안 직접 감독을 하는 사람은 학생과 함께 수중에 있어야 한다.
2. **간접 감독(Indirect supervision):** 학생의 다이빙과 기술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 일반적인 관찰, 평가와 지시. 강사는 다이빙 장소에 있어야 하며 학생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3. **교육생 사전 조건:**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 이것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한 과정 중에 완료할 수 없다. 여기에 명시된 조건들은 강사의 재량으로 면제될 수 없다. 사전 조건에 대한 면제는 국제 본부 훈련부에서 과정, 다이빙 장소 및 과정 참가자의 이전 다이빙 경험 등을 고려한 서면 면책서로만 가능하다.

약자(Abbreviations):

CWT: 고정 웨이트 다이빙(Constant Weight), 핀과 프리다이버 자신의 힘으로만 하는 모든 프리다이빙. 모든 웨이트는 다이버가 착용함.

CNF: 핀 없는 고정 웨이트 다이빙(Constant Weight No Fins), 핀을 착용하지 않고 프리다이버 자신의 힘으로만 하는 모든 프리다이빙. 모든 웨이트는 다이버가 착용함.

FIM: 프리 이머전(Free Immersion), 프리다이버의 팔로 줄을 당겨 내려가는 프리다이빙.

VWT: 가변 웨이트 다이빙(Variable Weight), 추를 타고 내려가고 다이버의 힘으로 상승하는 프리다이빙.

STA: 수면 무호흡(Static Apnea), 제한 구역의 수면에서 숨을 멈추는 것.

DYN: 수평 잠영(Dynamic Apnea), 제한 구역의 수중에서 핀을 사용하여 수평 이동하는 것.

DNF: 핀 없는 수평 잠영(Dynamic Apnea No Fins), 제한 구역의 수중에서 핀을 사용하지 않고 수평 이동하는 것.

13.9 양식(Forms)

1. 회원들은 규정과 절차에서 제공되는 PFI의 양식을 교육 과정에서 사용해야 한다. PFI 국제본부에서 만들지 않고 사전 허가 없이 생산된 문서는 사용할 수 없다. PFI의 양식이 아닌 경우의 사용은 교육 전에 승인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 a. 학생 또는 강사가 양식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
 - b. 현지 법률에 따라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양식

13.10 최종 시험(Exams)

1. 모든 PFI 다이버와 지도자 등급 과정의 합격 점수는 80% 이상이며, 틀린 문제는 강사와 함께 풀어 봄으로써 100% 이해해야 한다. 학생의 점수가 80% 미만인 경우 별도의 시험문제가 있다면 재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13.11 다이빙 지도자 크로스오버(Crossover) 요건

다른 교육 단체의 지도자 등급은 해당 단체의 현재 등급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비활동성인 경우 그 기간이 5년 미만이면, 활동성이 되기 위해 어떤 요건이 필요한 지 명시된 해당 단체의 서한을 받아야 한다. 그 후에 온라인 크로스오버 과정을 완료하고(언어에 문제가 없다면) 크로스오버 지원서와 현재 가지고 있는 지도자 등급의 증명 서류, 보험(지역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과 온라인 과정을 이수했다는 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약 비활동성 기간이 5년 이상이면, 활동성이 되기 위해 어떤 요건이 필요한 지 명시된 해당 단체의 서한을 받아야 한다.

비활동성 기간에 따라 크로스오버 하려는 등급의 평가(IEC)를 완료해야 한다.

13.12 2년 갱신/보충 정책(Two Year Renewal/Refresher Policy)

강사와 강사 트레이너는 가장 높은 등급을 최소 2년에 1회 가르쳐야 한다. 만약 2년 동안 가르치지 않았다면 해당 등급에 비교습 상태가 되며, 활동성 교습 상태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업데이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통 2년 이상 갱신하지 않은 PFI 회원들이 이 규정에 해당되지만, 활동성 교습 상태인 회원들도 하위 등급은 가르칠 수 있으나 상위 등급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다음의 자세한 내용은 회원이 다른 기관의 동등 등급 과정의 강습을 인정받거나 강사 트레이너를 통한 업데이트로 완전한 활동성 교습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강사 트레이너에게 업데이트 교육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1. PFI: 업데이트는 PFI 프리다이버 및 스페셜티 등급만 해당된다.

비활동성 PFI 회원의 갱신

1. PFI 회원으로 2년 동안 갱신하지 않았지만 *타 다이빙 교육기관에서 강습해온 강사*의 갱신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 온라인 프로페셔널 업데이트 과정(On-line Professional Familiarization Course) 수료(온라인 코드는 본부에서 발급)
 - b. 해당 등급의 현재 사용되는 모든 교재를 구입하거나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
 - c. 해당 년도의 회원 갱신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d. PFI 회원 업데이트 양식을 지난 2년간 타 교육 기관에서 동등 등급을 가르친 활동의 증명과 함께 제출
 - e. PFI 비활동성 기간 동안 타 교육 기관에서 품질 보증(QA)에 문제가 없었다는 증명
2. PFI 회원으로 2년 동안 갱신하지 않았고 *타 다이빙 교육기관에서도 강습하지 않았던 강사*의 갱신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 온라인 프로페셔널 업데이트 과정(On-line Professional Familiarization Course) 수료
 - b. 해당 등급의 현재 사용되는 모든 교재를 구입하거나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
 - c. 해당 년도의 회원 갱신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d. 지난 2년간 다른 모든 교육 기관에서 품질 보증(QA)에 문제가 없었다는 증명
 - e. PFI 활동성 강사 트레이너와 함께 업데이트 교육으로 PFI 강사 평가 과정(IEC)을 완료
 - f. 업데이트를 진행한 강사 트레이너가 서명한 회원 업데이트 양식을 제출
 - g. 프리다이빙에 문제가 없다고 의사가 서명한 건강 진단서를 첨부
 - h. 유효한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처치(First aid) 인증 첨부

계속 갱신하는 PFI 회원의 활동성 유지 규정

1. 계속 갱신하는 PFI 회원으로 가장 높은 등급을 2년 이상 가르치거나 보조하지 않았으나 *타 프리다이빙 기관에서 동등 등급을 가르쳐왔다면* 활동성 교습 상태로의 갱신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 해당 등급의 현재 사용되는 모든 교재를 구입하거나 가지고 있음을 확인
 - b. PFI 회원 업데이트 양식을 지난 2년간 타 교육 기관에서 동등 등급을 가르친 활동의 증명과 함께 제출
 - c. PFI 비활동성 기간 동안 타 교육 기관에서 품질 보증(QA)에 문제가 없었다는 증명

또는

- d. 업데이트를 진행한 PFI 활동성 강사 트레이너를 통해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회원 업데이트 양식을 제출(강사 트레이너는 해당 최고 등급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2. 계속 갱신하는 PFI 회원으로 가장 높은 등급을 2년 이상 가르치거나 보조하지 않았고 *IF 프리다이빙 기관에서도 동등 등급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활동성 교습 상태로의 갱신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 지난 2년간 다른 모든 교육 기관에서 품질 보증(QA)에 문제가 없었다는 증명.
 - b. PFI 활동성 강사 트레이너와 함께 업데이트 교육으로 PFI 강사 평가 과정(IEC)을 완료
 - c. 업데이트를 진행한 강사 트레이너가 서명한 회원 업데이트 양식을 제출
 - d. 프리다이빙에 문제가 없다고 의사가 서명한 건강 진단서를 첨부
 - e. 유효한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처치(First aid) 인증 첨부

주의: PFI 국제 본부 훈련부 또는 지역 본부에서 갱신 서류를 검토한 후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 코드는 국제 본부에서 발급되며 앞서 언급한 절차에 대한 코드는 모두 무료이다.

강사 트레이너가 2년이상 비활동성인 경우에는 강사 트레이너 워크샵(ITW) 또는 PFI 훈련부 스태프가 진행하는 IT 크로스오버 과정에 참석해야 한다. 또한 관련 강사 등급의 갱신 조건도 갖추어야 한다.

PFI 보조 강사가 2년 이상 비활동성인 경우에는 위의 강사 갱신 절차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IT 서명이 필요한 곳에, PFI 강사가 서명할 수 있다.